

##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사랑의 실천인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한양대학교
2. 한양사이버대학교(신설 2008.12.04)
3. 한양여자전문대학(교명은 한양여자대학교라 한다)(개정 2012.02.01)
4. 한양공업고등학교
5.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개정 2006.03.01)
6. 한양중학교
7.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개정 2004.03.01)
8. 한양초등학교
9. 한양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신설 1999.01.06, 개정 2012.02.01)

**제3조의2 《삭제》** (2008.12.04)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7, 2009.02.26, 2012.08.28)

### 제 2 장 자산과 회계

####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1.27)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과 기타의

학교  
법인  
한 양 학 원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대학교육기관은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유치원장이 편성하고 집행한다.(개정 2006.11.27. 2022.07.01.)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신설 2006.11.27)

**제9조의2《삭제》** (2006.11.27)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3 절 《삭제》 (2006.11.27)

**제13조 내지 제17조《삭제》** (2006.11.27)

**제18조 내지 제21조《삭제》** (1986.07.21)

## 제 3 장 기 관

###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이사장 1인 포함)(개정 2006.11.27, 2009.02.26, 2011.11.18)
2. 감사 2인

②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개정 2006.11.27, 2009.02.26, 2011.11.18)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1.27, 2017.01.19)

②《삭제》(2009.02.26)

③이 법인이 경영하는 한양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는 자는 한양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사로 재임한다.(개정 2006.04.07)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

한다. 이 경우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7)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1.27)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7., 개정 2007.11.27.)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06.11.27., 개정 2007.11.27.)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신설 2006.11.27, 개정 2007.11.27.)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11.27.)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자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24조의4(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한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신설 2006.11.27, 개정 2007.11.27.)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6.11.27, 개정 2007.11.27, 2008.12.04)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개정 2007.11.27.)

2. 한양대학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개정 2007.11.27.)

3. 한양사이버대학교 평의원회 및  
한양여자대학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개정 2008.12.04, 2012.02.01)

4.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개정 2008.12.04)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한다.(신설 2006.11.27, 개정 2007.11.27)

④추천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추천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7.11.27)

⑤추천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11.27)

⑥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11.27)

⑦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7.11.27)

**제25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1.27)

③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6.11.27)

⑤감사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1.27, 2007.11.27)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11.27., 개정 2022.07.0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희선으로 취임한다.

(개정 2006.11.27)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8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자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일

#### 제30조(임원의 결직금지) ①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7.11.27)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장을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을 겸할 수 없다.

## 제 2 절 이 사 회

####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연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06.11.27)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 2006.11.27)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1.27)

#### 제33조(이사회의 의결 제책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07.01.)

#### 제35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27)

#### 제35조의2(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회 회의록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11.27, 개정 2007.11.27, 2021.07.01)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07.11.27)

## 제 4 장 수 익 사 업

####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증권·관광회사에 출자(개정 2014.12.29, 2017.01.19)
2. 임대사업
3. 물류센터(신설 2017.01.19)
4. 영림·농장·목장사업
5.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신설 2020.09.01)
6. 제1호 내지 제5호 관련 일체의 부대사업(신설 2020.09.01)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양증권주식회사·백남관광주식회사에 출자하며, 한양빌딩·《삭제》·순화빌딩·《삭제》·기타 부동산의 임대사업·《삭제》·퇴계원농장·제주오피스텔·법인이 출자한 ㈜한양매니지먼트컴퍼니·기타 수익용 토지에 조림사업을 경영한다.(개정 2003.04.08, 2014.12.29, 2017.01.19, 2018.12.01, 2020.02.21, 2020.09.01)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이 법인 수익사업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한 양 빌 딩 : 서울특별시 종로 을지로 2가 195-3
2. 《삭제》(2020.02.21.)
3. 순 화 빌 딩 : 서울특별시 종로 순화동 5-2
4. 《삭제》(2018.12.01.)
5. 《삭제》(2018.12.01.)
6. 퇴계원 농장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653(개정 2018.12.01)
7. 제주오피스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 555-2(신설 2018.12.01)
8. 법인이 출자한 ㈜한양매니지먼트컴퍼니 : 서울특별시 종로 순화동 5-2(신설 2020.09.01.)

**제39조(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 5 장 해 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02.26)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09.02.26)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교 직 원

### 제 1 절 교 원

#### 제 1 관 임 명

**제43조(임용)** ①본조 이하에서 사용하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경임, 파견, 강

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개정 2016.04.29)

②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7.11.27, 2016.04.29)

③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23.08.29)

④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정관 제43조 이하를 적용할 때에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경임·초빙교원 등을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 조건을 정하여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07.03.07, 2016.04.29, 2019.06.27)

#### 1. 근무기간

가. 부교수·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07.22)  
나.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나 교수 직급으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0.03.19)

2. 급여 : 대학의 교원 및 일반직원 급여규정에 의한 보수(개정 2010.03.19)

3. 근무조건 : 강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교육·봉사 등에 관한 사항

5. 재임용계약 요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7.03.07)

7.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결한 계약조건을 변경 가능

⑤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의 대학교육기관 강사, 경임·초빙교원 등의 임용과 제4항의 교원에 대한 전보, 경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와 이에 대한 복직에 대하여는 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4.03.26, 2016.04.29, 2019.06.27)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의료원장·대학원장·학장·처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며, 그 외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한다.

(개정 2007.03.07)

⑦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03.07., 2016.04.29., 2023.05.01.)

⑧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3.05.01.)

⑨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6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한다.(신설 2023.05.01.)

**제43조의2(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7.03.07)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2003.02.13)

③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3.02.13, 2016.04.29)

④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08.01., 향변경 2023.05.01.)

#### 제43조의3 《삭제》 (2012.08.01)

**제43조의4(세부사항)** 교원,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03.07, 개정 2016.04.29, 2019.06.27)

**제43조의5(전형결과 공개)** ①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7)

②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신설 2006.11.27)

##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4조(휴직)** 사립학교법 제59조에 의하여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8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03.07, 2010.05.07., 2016.04.29., 2022.09.16)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6.04.29)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개정 2010.05.07)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07.11.27, 2010.05.07, 2014.03.26, 2017.04.01.)

8.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개정 2016.04.29)

9. 관찰성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신설 2007.03.07)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 2007.03.07)

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신설 2007.03.07, 개정 2018.02.21)

1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7.04.01, 개정 2018.02.21)

14. 구속기소 및 기타 임용권자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신설 2010.05.07, 개정 2016.04.29., 2017.04.01., 2022.05.01)

#### 제45조(휴직의 기간) ①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03.07)

1. 제44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 의견(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03.26., 2023.07.01)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4.29)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04.29)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03.07, 개정 2016.04.29)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03.07, 개정 2016.04.29)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03.07, 개정 2016.04.29)

12. 제44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7.04.01)

13. 제44조 제14호의 사유 중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1심판결 종료 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임용권자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휴직기간으로 하되,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04.01, 개정 2022.05.01)

②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 제2호·제4호내지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03.07, 개정 2016.04.29)

####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

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23.11.01.)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3.07, 2016.04.29)

③제44조 제1호에서 정한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제44조 제2호에서 정한 휴직기간, 제44조 제4호에서 정한 휴직기간, 제44조 제7호에서 정한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제44조 제8호에서 정한 휴직기간, 제44조 제12호에서 정한 휴직기간은 근속 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07.03.07, 개정 2016.04.29, 2018.02.21)

④제44조 제6호의 고용휴직 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산입 여부는 각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8.02.21, 개정 2022.05.01)

**제48조(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의하여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03.07, 2016.04.29)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악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개정 2016.04.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7.03.07, 2016.04.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07.03.07, 2016.04.29)

④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07.03.07, 2016.04.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3.07, 2016.04.29)

⑥교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03.07, 2016.04.29)

**제48조의2(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법 제58조에 의하여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07.03.07, 개정 2016.04.2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개정 2014.02.14)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8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환정한다.(신설 2016.04.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신설 2016.04.29)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신설 2016.04.29)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신설 2016.04.29)

②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04.29)

③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6.04.29)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4.29)

③대학교육기관 강사, 경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의 본문 중 "교원"을 "대학교육기관 강사, 경임·초빙교원 등"으로, 제1항의 "징계처분"을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개정 2019.06.27)

**제50조의2(후임자 보총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의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의3(정년)** ①대학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총장은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정 2018.10.26.)

②유·초·중·고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단, 학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03.07, 2018.10.26)

**제50조의4(명예퇴직)** 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4.29)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

칙으로 정한다.

③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 제 3 관 교 원 인 사 위 원 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 대학교육기관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1.27, 2016.04.29, 2019.06.27.)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03.07)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2.07.22, 2016.04.29, 2019.06.27)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또는 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4.29)

②초·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6.11.27, 개정 2016.04.29)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6.11.27)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심의를 함께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4.03.26, 2016.04.29)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건학이념의 구현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07.11.27)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종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04.29)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 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7.01.)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회(초·중·고등학교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2.07.01.)
  -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목 변경 2022.07.01.)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개정 2022.07.01.)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8.08.01.]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신설 2022.07.01.)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07.01.)

**제59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4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8.08.01]

#### 제60조《삭제》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02.21]

제63조(제책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인원이 재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본 규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신설 2016.04.29)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징직·감봉·건책으로 한다.

③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개정2020.02.21)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건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본조신설 2016.04.29]

제63조의4(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4.29)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04.29)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4.29.]

제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1.27, 2012.08.01, 2016.04.29, 2022.07.01)

②제6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2에 따른 감사원·검찰 또는 경찰의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6.04.29)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04.29)

제66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08.01]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

명한다.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3 절 《삭 제》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삭 제》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02.1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대우직원선발·근속승진·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우직원 선발 임용사항은 초·중·고등학교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일반직원 7급 이하 일반직원 중 당해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 승진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17.02.10)

⑥ 근속 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단, 초·중·고등학교 일반직원은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2.10)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단, 초·중·고등학교 일반직원은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07.01.)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의2(명예퇴직)** ① 법인·대학교육기관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직원이 정년퇴직일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02.26, 개정 2016.07.01, 2022.07.01)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초·중·고등학교 직원은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대학교육기관 소속 직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02.26, 개정 2016.07.01, 2022.07.01)

③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9.02.26)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8.01., 2022.07.01., 2023.11.01.)

1.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은 법인에 따로 두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일반직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신설 2023.11.01.)

2. 일반직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포함하되, 강등은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신설 2023.11.01.)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5 절 조 교

**제88조의2(조교의 임용)** 조교는 교원의 교육·연구를 보조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조교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27, 개정 2018.02.21, 2019.06.27)

###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범 인

**제89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02.09)

② 제1항의 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국장을 둘 수 있으며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02.09)

③법인사무국에는 총무팀·경리팀·관재팀·감사팀·안전관리팀을 두고, 각 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6.11.27, 2022.02.0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의2(백남기념사업회)** ①본 학원 설립자의 건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백남기념사업회를 둔다.(신설 2012.04.26)

②백남기념사업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04.26)

## 제 2 절 대 학 교

**제90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18.02.21)

③대학교에 부총장(서울), 부총장(ERICA), 연구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및 의무부총장을 둔다.(개정 2007.11.27, 2009.11.26, 2010.04.15., 2018.02.21., 2023.07.01)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총장 직속으로 비서실, 감사실, 미디어전략실, 대학혁신단, 글로벌사회혁신단, 서울캠퍼스안전위원회, ERICA캠퍼스안전위원회 및 한양ESG위원회를 둔다.(2007.11.27., 2010.04.15., 2012.09.28., 2014.02.14., 2015.08.01..2018.02.21., 2018.08.01.., 2020.07.01.., 2020.12.29., 2022.02.09., 2023.07.01)

⑥부총장(서울)은 다음 각 호의 교육부문 관련 부서를 관할하며 직속으로 사회봉사단을 둔다.(개정 2008.02.26., 2009.11.26, 2010.04.15, 2014.02.14., 2015.08.01., 2016.07.01., 2016.07.01. 2017.02.10., 2018.02.21, 2018.08.01., 2020.12.29., 2023.07.01.(각호 신설))

1. 교무처

2. 교육혁신처

3. 대학원전략처

4. 입학처

5. 학생인재개발처

⑦부총장(ERICA)은 다음 각 호의 교육부문 관련 부서를 관할하며 직속으로 사회봉사단을 둔다.(개정 2008.08.14, 2019. 11.26, 2010.04.15, 2010.10.06, 2011.09.28, 2018.10.26, 2015.08.01., 2016.02.23, 2016. 07.01, 2018.02.21, 2018.08.01., 2020.05.01., 2021.08.01.., 2021.11.10.., 2023.07.01.(각호 신설))

1. 교무처

2. 교육혁신처

3. 입학처

4. 학생인재개발처

5. 대외협력실

6. ERICA융합원

7. PRIME사업단

8. 지능형로봇사업단

9.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단

⑧연구부총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문 관련 부서를 관할한다.(개정 2018.02.21., 2023.

07.01.(각호 신설))

1. 산학협력단

2. 학술연구처

3. LINC3.0사업단

4. 창업지원단

5. 한양에너지환경연구원

6. 한양생명과학기술원

7. 한양스마트반도체연구원

⑨산학협력부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부문 관련 부서를 관할한다.(신설 2023.07.01.)

1. 에리카산학협력단

2. 학술연구처

3. LINC3.0사업단

4. 산학연협력단지사업단

5. 한양맞춤의약연구원

6. 한양환경에너지기술연구원

⑩부총장은 교수인 교원으로 보하고, 처장, 원장 및 단장은 교수인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실장, 부처장 및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센터장 및 위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7.11.27, 2010.04.15, 2014.02.14, 2014.09.26., 2015.08.01., 2018.02.21., 2018.08.01., 2020.12.29., 2023.07.01.)

⑪제10항에도 불구하고 단장, 원장, 센터장 및 위원장은 석좌교수 또는 특훈교수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0.01.01., 항변경 2023.07.01.)

⑫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8.08.01, 2020.01.01., 항변경 2023.07.01.)

**제91조(대학원·대학)** ①대학교의 대학원·대학에 대학원장·학장을 두며, 대학원장과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원장과 부학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10.04.15)

②대학원장과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또는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다만, 대학원장은 대학원 교육을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10.04.15, 2015.12.18)

③대학원과 대학에 경영지원팀, 행정팀 및 그룹을 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팀장 및 그룹장은 대학원장 및 학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교학행정 실무를 담당한다.(개정 2007.11.27, 2010.04.15, 2010.10.06, 2015.08.01)

④대학원장·학장은 교수인 교원으로, 부원장과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하고, 팀장 및 그룹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원장은 석좌교수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9.02.11, 2010.04.15, 2015.08.0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본부기관)** ①서울캠퍼스에 교무처, 교육혁신처, 대학원전략처, 입학처, 학생인재개발처,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처, LINC3.0사업단, 창업지원단, 한양에너지환경연구원, 한양생명과학기술원, 한양스마트반도체연구원, 한양인구문제연구원, 기획처, 대외협력처, 국제처, 총무처, 관리처, 정보통신처를 두고, ERICA캠퍼스에 교무처, 교육혁신처, 입학처, 학생인

재개발처, 대외협력실, ERICA융합원, PRIME사업단, 지능형로봇사업단,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단, 에리카산학협력단, 학술연구처, LINC3.0사업단, 산학연협력단지사업단, 한양맞춤의약연구원, 한양환경에너지기술연구원, 기획처, 국제처, 총무관리처,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을 둔다.(개정 2019.06.27., 2020.01.01., 2021.11.10., 2022.07.01., 2023.02.25., 2023.07.01., 2023.11.01)

②제1항의 기관에는 처장, 단장 또는 원장을 두고, 교수인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각 기관에는 실장, 부처장, 부단장 또는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07.01.)

④제1항의 기관에는 팀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08.01]

#### 제93조 《삭제》(2007.10.26)

#### 제94조 《삭제》(2023.07.01.)

**제95조(부속·부설기관)** ①대학교에 필요에 따라 부속·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②부속·부설기관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초빙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8.08.14., 2019.06.27.)

③부속·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10.26)

④부속·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속·부설기관의 분장업무 등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0.26)

**제96조(학술정보관)** ①학술정보관에는 서울캠퍼스에 백남학술정보관을, ERICA(에리카)캠퍼스에 ERICA(에리카)학술정보관을 둔다.

②백남학술정보관과 ERICA(에리카)학술정보관에 관장을 두고, 교수인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백남학술정보관에는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각 학술정보관에 팀 또는 부를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08.01]

**제97조(의료원)** ①의료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원장을 두며, 교수로 경보한다.

②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과대학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각 부속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의료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의료원에는 부의료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하거나 일반직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⑤의료원에는 경영지원실, 의료정보실, 대외협력실을 두며, 경영지원실에는 경영지원실장을 두고, 의료정보실에는 의료정보실장을 두며, 대외협력실에는 대외협력실장과 대외협력

부실장을 둔다. 경영지원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하거나 일반직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의료정보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하거나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대외협력실장과 대외협력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하거나 일반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대외협력부실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총보실장을 겸한다.(개정 2020.01.01.)

⑥제5항의 기관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장은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⑦의료원에는 다음 각 호의 병원을 두며, 한양대학교병원에는 전문의료기관으로 한양대학 국제제병원(이하 “국제병원”으로 한다)을 둔다.

1. 한양대학교병원(이하 “서울병원”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2.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하 “구리병원”으로 한다)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3.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하 “류마티스병원”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⑧제7항의 각 병원은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행위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등을 한다.

⑨제7항의 각 병원에는 병원장을 두고 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하며 의료원장이 위임하는 근거에 의하여 각 병원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⑩각 병원에는 병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하거나 일반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⑪각 병원에는 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둔다.

⑫서울병원과 구리병원에는 기획조정실을 두고, 기획조정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하거나 일반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⑬서울병원과 구리병원에는 수련교육부, 큐아이(QI)실을 두고, 서울병원은 고객서비스혁신센터, 구리병원은 고객진료협력센터를 두며, 수련교육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하며 큐아이(QI)실장과 고객서비스혁신센터장, 고객진료협력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하거나 일반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08.29.)

⑭서울병원과 구리병원에는 운영지원국과 간호국을 두고, 운영지원국장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간호국장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⑮제12항 내지 제14항의 기관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장은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⑯구리병원에는 임상시험센터 및 임상연구보호센터를 두고, 각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한다.(개정 2020.09.01., 2022.07.01., 2022.09.16.)

⑰서울병원과 구리병원에는 집중영양치료실을 두고 집중영양치료실장은 영양집중지원위원회 위원장이 경보한다.

⑱서울병원과 구리병원에는 진료부를 두고, 진료부에 진료 각 과를 두며, 진료 각 과에 의료기사팀을 둘 수 있으며, 진료 각 과장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으로 경보하고, 각 기사팀장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서울병원에는 응급진료부를 두고, 응급진료부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으로 경보하고, 응급진료부에 센터, 실, 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23.08.29.)

⑲서울병원과 구리병원에는 진료지원부를 두고, 진료지원부에는 실·팀을 둘 수 있으며, 각 실·팀장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4급 내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⑧서울병원에는 의학연구원을 두고, 의학연구원에는 임상연구보호센터, 임상연구논문지원팀, 임상시험센터, 인체유래물은행, 융합의료기기센터, 의료정보연구센터, 첨단재생의료센터, 의학연구행정팀을 두며, 임상연구보호센터에 임상연구보호센터지원팀과 IRB행정지원팀을 둔다. 의학연구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하고, 각 센터장과 은행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하며, 의학연구행정팀장, 임상연구보호센터지원팀장, IRB행정지원팀장은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0.09.01., 2020.12.29.)
- ⑨류마티스병원에는 진료부와 연구부 및 진료·연구지원센터를 둔다. 진료부에는 진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 각 과, 센터를 둘 수 있고, 연구부에는 류마티스임상연구센터와 류마티스인체유래물은행을 둔다. 류마티스임상연구센터에는 임상시험실, 임상역학·경제연구실, 약물역학연구실, 맞춤의학연구실을 둔다. 진료 각 과장과 센터장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으로 경보하고, 각 실장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 ⑩국제병원에는 진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 각 과와 진료지원 각 과를 두고, 진료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료지원부서의 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⑪제3항 내지 제2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의료원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08.01.]

### 제 3 절 사이버대학교

- 제98조(총장 등)** ①사이버대학교에 총장을 둔다.(개정 2006.02.22.)  
 ②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사이버대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06.02.22.)  
 ③사이버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경보한다.  
 (개정 2006.02.22., 2009.11.26.)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02.22., 2009.11.26.)
- 제98조의2(대학원)** ①대학원의 대학원장을 둘 수 있으며, 대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교학팀장은 대학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교학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④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인 교원으로,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경보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26.]

- 제99조(본부조직)** ①사이버대학교에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총무처, 정보처, 학생지원처, 교육혁신센터, 제3교사사업단, 정보보호실, 국제교육사업단을 둔다.(개정 2019. 06.27., 2020.01.01., 2020.04.01., 2020.12.29., 2021.04.01., 2021.09.01., 2022.05.01., 2023.02.25.)  
 ②제1항의 각 기관에는 처장, 센터장, 단장 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처장, 센터장, 단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처장 및 부센터장, 부단장 또는 부실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9.06.27..)

2020.01.01., 2020.12.29., 2021.09.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항변경 2020.04.01.)

- 제99조의2(산학협력단)**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합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이버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산학협력단의 주요사항은 총장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1.01.]

**제100조(부속시설)** ①사이버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6.11.27., 2009.11.26., 2011.12.22., 2018.08.01., 2019.06.27.)

②부속시설에는 부속시설의 장을 두되 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06.22., 2008.06.26.)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4 절 여자대학교

**제101조(총장 등)** ①여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여자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02.11.]

**제102조(하부조직)** ①여자대학교에 교무처·학생복지처·기획조정처·산학협력처·사무처·입학홍보실·국제협력실을 둔다.(2020.02.21.개정)

②각 본부행정조직에 처장 또는 실장을 두며, 교수·부교수 또는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05.01.)

③각 본부행정조직에 처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 또는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처장 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05.01.)

④각 본부행정조직에 팀(과) 또는 센터(단)를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08.01.]

**제102조의2(산학협력단)** ①여자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합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3급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05.01.)

[전문개정 2009.02.11.]

**제103조(부속시설)** ①여자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부속·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부속·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6.09.01.)

③부속·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속·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02.11]

**제104조(도서관)** ①도서관에 학술정보서비스팀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02.11, 2010.10.06, 2014.09.26, 2020.09.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5 절 고 등 학 교

**제105조(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단, 야간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 있고, 43학급 이상일 경우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 중 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6조(하부조직)** ①고등학교의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서의 장은부장교사로 보한다.

(개정 2021.08.01)

②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5급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4.02.14, 단서조항 삭제 2022.07.01)

③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6 절 중 학 교

**제107조(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8조(하부조직)** ①중학교의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서의 장은부장교사로 보한다.

(개정 2021.08.01)

②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6급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1.08.01)

③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7 절 초 등 학 교

**제109조(교장 등)** 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0조(하부조직)** ①초등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서의 장은부장교사로 보한다.

(개정 2021.08.01)

②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5급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4.02.14, 2021.08.01, 2021.09.01, 단서조항 삭제 2022.07.01)

③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8 절 유 치 원

**제111조(원장 등)** ①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신설 2003.04.08)

②원장은 원무를 통합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유치원을 대표한다.

③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교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유치원에 행정담당자(7급 이하)와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27, 2021.08.01)

[본조신설 2003.04.08]

## 제 9 절 정 원

**제112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내지 별표11과 같다.(직급명칭 개정 2007.10.26, 2008.06.26, 2009.02.11, 2011.12.22, 2012.06.22, 2014.02.14, 2016.04.29, 2019.06.27, 2020.07.01, 2020.09.01, 2021.11.10, 2022.07.01)

##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전문개정 2023.11.01]

**제1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제114조(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⑥제32조 제1항 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⑦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5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여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여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추천 범위)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추천 범위는 교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로 규정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127조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6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117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 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1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28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 제11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을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0조(회의 및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1.)

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21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안건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2조(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제114조제1항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3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4조(학교内外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되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125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제1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를 적용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27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 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불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9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1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2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11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34조(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5조(이사회의 지원)**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6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37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에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과 법률·행정·의료분야 등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40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1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2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3조(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5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

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6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47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0 장 대학평의원회 [신설 2006.11.27]

**제149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대학교 및 한양사이버대학교와 한양여자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8.12.04.)

**제150조(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7.06., 2008.12.04., 2020. 12.29.)

### 1. 한양대학교

가. 교원	6명
나. 직원	3명
다. 조교	1명(신설 2021.07.01.)
라. 학생	3명
마.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 2. 한양사이버대학교(신설 2008.12.04.)

가. 교원	5명
나. 직원	2명
다. 조교	1명(신설 2021.07.01.)
라. 학생	1명(개정 2020.12.29., 2021.07.01.)
마.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 3. 한양여자대학교

가. 교원	5명
나. 직원	2명
다. 조교	1명(신설 2021.07.01.)
라. 학생	1명(개정 2020.12.29., 2021.07.01.)
마.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종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1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52조(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평의원 및 조교평의원의 임기는 해당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07.01.)

②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같다.

**제153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11.27)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27)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4조(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1 장 보 칙

**제155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한다.

**제15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57조(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07.01., 개정 2022.09.16.)

**제157조의 2(사학기관 행동강령)** ①제157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②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09.16.]

**제158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이 사	김 연 준	1914. 02. 20	1948.07.01 ~ 1951.06.30
"	조 병 옥	1894. 08. 15	"
"	이 묘 육	1902. 12. 09	"
"	이 원 철	1896. 07. 11	"
"	김 월 준	1901. 06. 15	"
"	백 관 수	1889. 01. 28	"
"	최 태 용	1898. 11. 20	"
감 사	서 창 제	1899. 07. 06	1948.07.01. ~ 1950.06.30

## 附 則

1948년 07월 01일 제정

1964년 01월 07일 개정

1972년 12월 21일 개정

1974년 08월 06일 개정

1975년 09월 08일 개정

1977년 11월 08일 개정

1978년 02월 06일 개정

1979년 02월 28일 개정

1980년 07월 08일 개정

1981년 10월 15일 개정

1983년 11월 12일 개정

1984년 11월 10일 개정

1986년 07월 21일 개정

1988년 08월 02일 개정

1988년 12월 27일 개정

1991년 12월 10일 개정

1991년 12월 27일 개정

1992년 12월 30일 개정

1993년 12월 06일 개정

1994년 12월 02일 개정

1995년 03월 25일 개정

1995년 11월 04일 개정

1996년 07월 15일 개정

1996년 12월 24일 개정

1997년 02월 06일 개정

1997년 11월 21일 개정  
1998년 05월 01일 개정  
1998년 06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1일 개정  
1999년 02월 12일 개정  
1999년 04월 15일 개정  
2000년 01월 17일 개정  
2000년 07월 04일 개정  
2001년 04월 02일 개정  
2001년 04월 30일 개정  
2001년 09월 29일 개정  
2001년 12월 17일 개정  
2002년 06월 18일 개정  
(~ 이상 개정내용 생략)

**附    則**(2003.02.13개정, 대학재정과81422-190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3.04.08개정, 대학재정과81422-518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3.12.01개정, 사학정책과81422-1695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3.12.17개정, 사학정책과81422-1800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의 교명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附    則**(2004.05.08개정, 사학지원과-1218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5.01.31개정, 사학지원과-660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5.05.16개정, 사학지원과-3100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5.11.01개정, 사립대학지원과-1099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선임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기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유지한다.

**附    則**(2005.11.15개정, 사립대학지원과-1413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6.01.11개정, 사립대학지원과-237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6.02.22개정, 사립대학지원과-1153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6.04.07개정, 사립대학지원과-2202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6.11.27개정, 사립대학지원과-6454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 및 학교장의 임기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 및 학교장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및 당해 학교장의 임기종료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附    則**(2007.03.07개정, 사립대학지원과-1134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7.07.06개정, 사립대학지원과-3030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07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007.07.27 사립학교법개정으로 직제, 정원 부분은 보고사항으로 변경됨)

**附    則**(2007.10.26개정, 법인 제2007-284호 보고)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7.11.27개정, 사립대학지원과-5365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8.02.26개정, 법인 제2008-77호 보고)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8.06.26개정, 법인 제2008-301호 보고)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8.08.14개정, 법인 제2008-213호 보고)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8.12.04개정, 대학경영지원과-4580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9.02.11개정, 법인 제2009-59호 보고)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 명칭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附    則**(2009.02.26개정, 대학경영지원과-650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9.11.26개정, 법인 제2009-393호 보고)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0.03.19개정, 사립대학지원과-1747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0.04.15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0.05.07개정, 사립대학지원과-2829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0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0.10.06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1.09.28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본부기관) 제2항 및 제17항의 교양교육원 관련사항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적용한다.

**附 則**(2011.11.18개정, 사립대학제도과-6785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1.12.22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12조, 별표2 내지 11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한다.

**附 則**(2012.02.01개정, 사립대학제도과-665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2.02.24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2.04.26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2.06.04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2.06.22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2.07.22개정, 사립대학제도과-5267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2.08.28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7조(의료원) 직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간제 학교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기간제학교장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종료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附 則**(2012.12.18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3.12.26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4.02.14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4.03.26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4.04.30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4.08.20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4.09.26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9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4.12.12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4.12.29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5.02.17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02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5.08.25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08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8항의 총무관리처 IT지원팀 폐지에 관해서는 2016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5.12.18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6.02.23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12항 정보통신처 조직개편 사항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6.03.23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6.04.29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3항, 제48조 제6항, 제48조의 3의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6.07.01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2조 제12항의 정보통신처 조직개편 사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6조 제2항의 학술정보관 조직개편에 관

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6.08.30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6.10.31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7.01.19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애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  
에도 불구하고 임기종료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附 則**(2017.02.10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7.04.01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7.06.29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7.11.27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8.01.19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8.02.21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8.05.29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8.07.31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8.10.26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8.11.29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9.06.27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항, 제5항, 제43조의4,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1호는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교원 등이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된 것으로 본다.

**附 則**(2019.10.02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9.12.31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0.02.20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3조의3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附 則**(2020.03.30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0.04.28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0.06.26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0.08.28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0.12.29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1.03.31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1.06.23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1.07.23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1.08.27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1.11.09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2.02.08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2.04.29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2.06.23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2.09.15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3.02.24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3.04.28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3.06.30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3.08.29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3.10.31개정, 법인 이사회 승인)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lt;별표 1&gt; (개정 2006.11.27)

**법인 일반직원 정원(한양학원)**

직급별	인원	직급별	인원
<b>총 계</b>	55	7급	8
<b>일반직계</b>	<b>49</b>	8급	7
2급	2	9급	7
3급	5		
4급	6	<b>기능직계</b>	<b>6</b>
5급	6	6등급	4
6급	8	7등급	2

&lt;별표 2&gt; (개정 2005.11.15, 2011.12.22, 2012.06.22, 2016.04.29, 2020.09.01, 2021.05.01)

**한양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급별	인원	직급별	인원
<b>총 계</b>	1,242		
<b>일반직계</b>	<b>1,020</b>	6급	232
2급	18	7급	379
3급	38		
4급	141	<b>기능직계</b>	<b>222</b>
5급	212	6등급	74
		7등급	148

&lt;별표 3&gt;(개정 2005.11.15, 2008.06.26, 2019.06.27., 2020.07.01., 2023.05.01.)

**한양사이버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급별	인원	직급별	인원
<b>총 계</b>	60		
<b>일반직계</b>	<b>60</b>	5급	16
2급	1	6급	25
3급	5	7급	3
4급	10		

<별표 4>(개정 2009.02.11, 2011.12.22, 2021.11.10)

#### 한양여자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급별	인원	직급별	인원
<b>총 계</b>	129	8급	8
<b>일반직계</b>	89	9급	8
2급	2		
3급	9	<b>기능직계</b>	40
4급	15	6등급	8
5급	19	7등급	8
6급	16	8등급	12
7급	12	9등급	12

<별표 5>(개정 2011.12.22, 2014.02.14, 2022.07.01)

#### 한양공업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급별	인원	직급별	인원
<b>총 계</b>	10		
<b>일반직계</b>	10		
5급	1	8급	1
6급	0	9급	5
7급	3		

<별표 6>(개정 2011.12.22, 2014.02.14, 2022.07.01)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급별	인원	직급별	인원
<b>총 계</b>	9		
<b>일반직계</b>	9		
5급	1	8급	1
6급	0	9급	4
7급	3		

<별표 7>(개정 2011.12.22, 2014.02.14, 2022.07.01)

#### 한양중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급별	인원	직급별	인원
<b>총 계</b>	5		
<b>일반직계</b>	5		
6급	1	8급	0
7급	0	9급	4

<별표 8>(개정 2011.12.22, 2014.02.14, 2022.07.01)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급별	인원	직급별	인원
<b>총 계</b>	6		
<b>일반직계</b>	6		
6급	1	8급	2
7급	0	9급	3

<별표 9>(개정 2011.12.22, 2014.02.14, 2022.07.01)

#### 한양초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급별	인원	직급별	인원
<b>총 계</b>	13		
<b>일반직계</b>	13		
5급	1	8급	3
6급	2	9급	4
7급	3		

<별표 10>(신설 2003.04.08, 개정 2011.12.22, 2014.02.14)

#### 한양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일반직원 정원

직급별	인원	직급별	인원
<b>총 계</b>	5		
<b>일반직계</b>	5		
7급	1	9급	3
8급	1		

<별표 11>(개정 2005.11.15, 2011.12.22, 2018.01.19, 2019.10.02, 2022.09.16)

### 의료원 일반직원정원

직급별	인원	직급별	인원
<b>총 계</b>	<b>3,355</b>		
<b>일반직 계</b>	<b>2,828</b>	<b>기술직 계</b>	<b>85</b>
2급	—	4급	1
3급	4	5급	9
4급	143	6급	62
5급	194	7급	13
6급	1,194	8급	—
7급	874		
8급	419	<b>기능직 계</b>	<b>442</b>
9급	—	6등급	96
		7등급	272
		8등급	74
		9등급	—